

상법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간의 조화방안

이 두 기

Harmonization between Commercial Law an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Lee, Doo-Ki

Abstract

Current business accounting related rules including Kore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commercial law are retaining unique reason for being and own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Come from by this, There is conflicting from several parts between commercial law an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erefore, there are serious confusion and social waste in staff in charge's position such as companies and competent authorities which must apply this.

Purposes of this study to examine relation and reason of disharmony between both and involved problem in each rule and to present revision direction and repletion direction of individual accounting related rules, and reasonable and realistic re-thesis alternatives between commercial law an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adopted the methodology of deductive literature research which examine prior research and foreign cases and research contents of related laws. Together, this study aims to new groping in the up-to-date revision tendency after reflected Academic symposium entitled 'Relation lighting among accounting related rules in global world' that Korea Accounting Association, Korea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and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 holds jointly on January, 2005 and amended bill of commercial law which legislation advanced notice in October 2006 via public hearing of July, 2006 on October.

Difference between commercial law an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re caused from lacks of the systematic consistency basically. Substantial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may consider as follows: First, Japan style alternative that keeps current

commercial law and structure of regulation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s and gropes agreement with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econdly, alternative that revise the system of calculation regulation in commercial law sharply and delegate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i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y commercial law that is not regulation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s,

When remodels the system of accounting related rules newly which laying stress on commercial law, There needs to prescribe basic and essential items about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to commercial law

and to ready detail and technological items which is involved with accounting processing to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by private-sector organization, Furthermore, It needs to the legal ground about establishment of private-sector organization to commercial law,

And need to erase the legal ground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of regulation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s and move by commercial law because company account standard doesn't have logical basis or reason that must be based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s, and there is no justice that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company which assets scale is more than seven billion,

It is difficult to apply to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which include human company and private merchant, and It equips global convergence in business exactly to general company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situation that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re globalized and complex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ion multiple tier of account standard and enactment of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accounting standards,

Hereafter, It must include institutional basic regulation to commercial law in order to enact IFRS, Stratification of GAAP, and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준칙, 해석,

예규 포함, 이하 같음)과 상법은 기업활동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사회현상을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규율하는 기업회계와 관련된 규범들이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은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상법은 기업에 관한 1차법원으로서 상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다.

기업회계기준, 상법은 각기 지닌 고유의 존재이유와 특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에서 상충되어 있어 이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들과 이해관계자 등 수범자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양 회계규범들간의 조화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각 규범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은 서로 단독적으로 각기의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상호간의 규정에 의존해서 비로소 개별 규범이 추구하는 목적을 비로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각 회계규범의 수범자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범자가 각 회계규범들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은 물론 상법상의 계산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범자의 혼란은 회계관련 부문에서의 사회적비용을 말한다.

조화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사회적비용의 최소화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회계규범이 추구하는 목적이 엄연히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사회적 필요이며 규범이며 효익일 뿐만 아니라 훼손되어서는 안될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회계 관련 규범들 간의 조화방안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기대효익의 최대화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의 지향목표에서의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한 논의라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들을 동시에 적용받아야 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각 규범들 간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의 마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회계 관련규범들간에 존재하는 부조화의 대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보여진다. 규범의 제·개정 관련기관들의 협력부족, 독자진행, 협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시스템적으로 각 규범은 부조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문제 전반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규범의 국제화도 강요되게 되었다. 이는 수범자들의 어려움을 반영치 않는 국제적 추세이다. 즉 각 규범의 실행 내지 수범비용(회계정보의 산출비용 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막연히 비용최소화에만 치중한 논쟁은 일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합의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

제적수준의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의무가 부과된 이래 종래의 공적 기관에서 제정된 조문식 기준에서 2000년 7월 이후에는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의한 설명식 기준서로 변하는 등 우리나라의 회계기준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회계기준은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회계기준의 통일추세에 맞춰 발빠른 변신을 하는 상황임에 비하여 상법의 회계규정의 제·개정은 매우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화는 비단 회계환경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법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2005년 1월에는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상사법학회가 공동으로 '글로벌시대에서 회계규범간의 관계 조명'이란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방식에 의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법무부는 2006년 7월의 상법개정공청회를 거쳐 2006년 10월에는 상법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상법 회계규정 중 주식회사의 자산평가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이 전부 삭제되고 재무제표의 종류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외는 시행령으로 위임되고 연결재무제표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대폭적인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금번의 개정상법에는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에 위임규정을 뒤 민간회계기구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에 기반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인해 비상장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회계처리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회계 관련규범들의 성격과 이들이 지향하는 목적들이 제각기 상이함으로 인하여 이들 간의 완전한 일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각 규범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미봉책만 제시하기 보다는 상법 제정기관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안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적 대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환경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관련 규범들 간의 관계와 이들 규범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부조화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개별규범들의 개정·보완방향과 관련규범들 상호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의 내용을 연구하는 연역

적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했다. 본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문헌연구였으며, 일부의 경우(김광운-2006)에는 실증연구의 방법을 취했지만 본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그 성격상 문헌연구의 방법이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05년 1월에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상사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시대에서 회계규범간의 관계 조명'이란 주제의 학술심포지엄과 법무부가 2006년 7월의 공청회를 거쳐 2006년 10월에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을 반영한 이후의 최근의 개정 동향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회계규범의 공급자(제정권자, 집행자)입장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회계규범의 수요자(이용자, 수범자)의 입장은 형식적으로만 고려된 감이 없지 않다. 공급자입장이란 상법학자, 법무부, 재정경제부, 회계학자, 회계기준원 등 각 규범의 제·개정예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들을 말하며, 수요자는 기업회계규범의 수범자인 기업과 주주, 채권자 등의 기업회계규범이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자를 일컫는다. 공급자측 위주의 논의는 각기 다른 목적과 성격으로 인하여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상호간의 의견수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았다. 물론, 집요하고 격렬한 학문적인 논쟁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업회계규범의 조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점은 사회적 기대효익의 최대화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의 지향목표에서의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반 회계규범의 수범자 또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조화방안을 고찰해봄이 보다 통일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수요자측면도 크게 외부감사대상기업과 비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나누어 고찰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기준의 다층화 경향에 따라 수요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상장글로벌기업, 상장일반기업,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을 외부감사대상기업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외부감사대상기업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양 기업군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선행연구들과 선진 외국의 앞선 논의 과정을 충분히 살펴봄으로써, 단순히 수요측만의 입장에서만 연구를 진행함에 따른 편협적이고 실현가능성 없는 연구결론에 이를 위험성을 방지코자 하였다. 또한, 회계기준의 다층화를 논하면서 수요자입장에서의 회계규범의 재정립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간 비교 연구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회계규정 간의 양자 비교 연구로서는 오수근(1991, 1999), 김지홍·박정우(1999), 한국회계연구원(2001), 김광운(2002), 이준봉(2002), 안경봉(2005)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¹⁾

첫째는 상법에서 계산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하고 회계기준에 계산관련 규정을 전부 위임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상법상의 계산규정 또는 위임규정으로 일반기업들을 위한 일반목적의 회계기준을 규정하게 하고, 기업 규모가 상당하고 이해관계가 많아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외감법에 의한 정보회계 중심의 특수목적의 기업회계기준을 별도의 체계로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셋째는 외감법을 폐지하고, 회계기준을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는 상장기업회계기준(가칭)에 의하고 그 외 기업(중소기업 포함)은 상법에 근거를 두는 일반기업회계기준(가칭)에 의하도록 구분하자는 입장이다.

2.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간 포괄적 연구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간 삼자 이상의 포괄적 비교연구로서 박정우(2000), 박정우·정태용(2005), 이만우·정석우·정규언(2005)의 연구가 있는데 모두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박정우(2000)는 우리나라 기업회계 관련법의 문제점을 상법상 계산규정의 미비, 기업회계법의 체계상의 문제, 기업의 회계서류에 대한 감사의 부실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법적규율 내용의 상위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법 계산규정의 대폭적인 보완과 입법, 상법의 계산규정으로 회계처리기준의 일원화, 외감법을 상법에서 수용하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해소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상법에 제도화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정우·정태용(2005)은 회계관련 법률들간의 부조화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로 법률제정 주체들간의 대화와 이해부족, 경제적 이슈에 대한 각 법률주체들의 공동연구 부족, 관련 분야 전문학회들의 상호이해기회 부족, 기업을 규율하는 법률들의 경제현실 반영정도의 상이(법률개정 속도의 차이) 등으로 파악하고,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등 상호간의 조화방안에 대해 총 20가지 항목을 추출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항들을 비교·검토하였다.

1) 김광운(2006), "회계기준, 상법 및 세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재검토", 회계와 감사연구 제 43호, 한국공인회계사회, pp. 7-8.

이만우·정석우·정규언(2005)은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회계규정의 조화방안으로 ① 모든 회계처리규정을 상법에서 정하는 방법 ② 외감법 대상범인에 적용할 기업회계기준과 그 외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상법회계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③ 모든 회계처리규정과 적용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분하고,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외감법의 수권이 아니라 상법의 수권을 받도록 법률적 위치를 재조정하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해석상의 문제와 수권법상의 적용범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에 대한 조화방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시스템, 네거티브시스템, 기업회계와 세법의 이원화 방안 및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네거티브시스템의 적용은 큰 문제가 없으며, 그 장점은 포지티브시스템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았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이원화 하는 방안의 도입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Ⅲ. 기업회계규범의 현황

우리나라 기업회계를 규율하는 주요 기업회계규범들인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의 제정목적,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규범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회계규범의 종류와 상호 관계

가. 기업회계규범의 종류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에 관한 규범은 크게 법률과 기업회계에 관한 회계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회계에 관한 법률로서 대표적인 것이 상법이다. 기업회계에 관한 규범중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규범으로 상법과 세법,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이 있으며, 외감법과 증권거래법이 기업회계기준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나. 기업회계 관련규범 간의 상호관계

세법, 기업회계기준, 상법 등의 경제법은 모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법인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추구하는 목적은 서로 다르나 모두 회계적인 부분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회계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상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나머지 세법, 기업회계,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은 특별법인 관계에 있다.

세법, 기업회계기준, 상법 등의 규정들 중에는 상호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규정들이 적지

않으며 일반법인 상법과 특별법인 외감법과의 유기적인 체계성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²⁾

(1)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관계

(가)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

상법은 상행위 전반에 걸친 일차적인 법원이다. 그러나, 상법은 회사의 계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상법 자체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의 계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외감법 제 13조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에 대한 통설은 기업회계기준을 외감법체계의 일부로 보아 외감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회계기준(준칙 및 그 해석 포함)은 외감법의 수권에 의해 제정된 범규범으로 내부적으로는 외감법의 하위규범이며 외부적으로는 외감법의 일부로서 다른 법률과 구별된다. 외감법은 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의 하위규범이 아니다. 따라서, 외감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이 상법 회계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다수설에 의한 경우 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은 배타적 적용영역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의 위임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상법의 하위규범이나 상관습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 주장도 존재한다.³⁾

(나) 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

현행 상법에 의하면 총칙편의 상업장부 규정은 상인에 대하여 적용되고 주식회사의 계산 규정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상인이라 함은 지속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존재인 기업의 법적 주체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기업과 회사기업 및 주식회사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상법 제9조에 의해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상인으로 회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총칙편의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외감법의 일부로 보아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볼 때,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이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기업회계기준 등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라는 규정들이다. 전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본과위

2) 박정우 정래용(2005), "세법, 기업회계, 상법 등 상호간의 조화방안연구", 글로벌시대의 회계규범간의 관계 재 조명 심포지엄자료, 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상사법학회, p. 83.

3) 오수근(2000), "회계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상사법연구, 제18권 제3호.

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형태로, 후자는 재무부의 고시(1958. 7. 2, 재무부고시 제169호)로 입법되었다. 그 뒤 1962년에 증권거래법과 상법이 입법된 후, 1974년에는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76호)과 '상장법인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재무부령 제1098호)이 나왔다. 1980년 외감법이 공포되면서 증권관리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로써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법률적 성격을 띠면서 법조문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통일된 회계체도로써 정립되었다. IMF 관리체제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업무가 민간전문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KAI)에 위탁되었다.

가. 기업회계기준

(1) 기업회계기준의 의의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즉 회계측정기준과 재무제표의 형식상의 표시방법 등 재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회계원칙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 제13조⁴⁾에 근거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 제91조⁵⁾에서 외부감사대상회사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등 기준은 기업회계 심사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제정한 회계원칙으로서(기업회계기준 제1조) 특히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성격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실무나 회계관행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의 일부이며 법체계에 속하는 것은 아닌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에 그 근거를 둔 법체계의 일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국 등의 회계기준체제와 다른 점이 있다.⁶⁾

기업회계기준은 기업 스스로 준거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보고하는 데 근거해야 할 판단기준이다.

(3) 기업회계기준의 목적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증권관리위원회가 1981년에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5) 기업회계기준 제91조 (외부감사대상회사 이외 기업의 회계처리)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이외 기업의 회계처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6) 김경호(2002), "회계투명성과 기업회계기준",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재인용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초로 공포하였다.

외감법의 입법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은 동기준 제1조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밝히고 있다.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 적용을 받는 기업과 그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처리와 보고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할 기준의 제정을 그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외감법의 위임을 받아 작성되어 사용되는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준칙, 해석, 해석사례가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들을 통합해 기준서 형식의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⁷⁾

나.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과 해석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때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간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준칙 및 해석의 관련 조항을 대체하며 기업회계기준의 일부가 된다. 이 기준서들은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과 같이 문단식으로 기술되고, 단순한 회계처리지침뿐 아니라 회계처리의 논리적 근거와 사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⁸⁾

2006년 10월 현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는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제2호 중간재무제표, 제3호 무형자산, 제4호 수익인식, 제5호 유형자산,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제8호 유가증권, 제9호 전환증권, 제10호 재고자산, 제11호 중단사업,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제13호 채권·채무조정,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15호 지분법, 제16호 법인세회계, 제17호 총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 제19호 리스,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제22호 주식기준보상, 제23호 주당이익 등이다.

다. 업종별 회계처리준칙과 세부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

7) 한국회계연구원(2001), "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KAI Forum, p. 4.

8) 국회사무처(2008), "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p. 2.

한 경우에는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또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업종별 회계처리준칙과 세부회계처리 기준으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원가계산준칙 등이 있다.

3. 상법

상법은 기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기본이념이 기업의 유지·발전과 기업거래의 원활 및 안전을 도모하고 기업주체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념으로 1962년 제정된 제정상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하 '상법상 계산규정'이라 지칭함)을 포함하고 있다.

상법 제1편 총칙에서 상업장부에 관한 독립된 장을 두고 있고, 제29조 제1항에서 상업장부의 작성목적과 종류를 들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회사의 회계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작성하여야 할 장부를 재무제표화(제447조, 제579조)하고 있다. 그 외에 주주총회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449조 제2항, 제447조의 2, 제579조의 2, 제583조).⁹⁾

상법 제29조 제2항은 상업장부의 작성에 대하여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반적·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에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업회계 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포괄규정을 둠으로써 기업회계 관행에 상법적 의미 내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여 기업회계와 상법 사이의 괴리를 없애려고 하였다.

현행 상법상 계산규정은 급속한 회계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4년의 개정 이후 적절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회계기준은 1981년 공포 이후 10차례 걸친 개정과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통한 새로운 기준서의 공포 등을 통해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적응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현행 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2006년 7월의 상법개정공청회를 거쳐 2006년 10월에는 상법개정에 관한 입법을 예고한 바, 상법 회계규정 중 주식회사의 자산평가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이 전부 삭제되고 재무제표의 종류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외는 시행령으로 위임되고 연결재무제표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대폭적인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4. 세법

9) 국회사무처(2003), 앞의 논문, p. 3.

세법의 목적은 과세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의 실현이다. 즉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비과세, 그리고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한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규범으로서의 세법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1949년 11월에 법률 제62호로 제정되어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규정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소득금액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강제하는 등 세무회계의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다¹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는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3조에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하여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과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상 기업회계의 존중 및 확정결산주의라는 구조하에서도 세법상의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며, 이러한 세법상의 별도의 규정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양자간의 부조화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원리에 의해 제정·운용되어야 하는 성격이므로 정보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업회계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공인회계사는 기업에 대하여 크게 회계감사, 기업진단 및 세무조정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외감법의 적용범위는 이들 활동 중 회계감사에 관한 것에 적용된다.

외감법 제13조는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10) 김진표(1999),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월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p. 3.

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외감법은 이러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제정권한을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 이에 따라 현재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가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되어 있으며,¹²⁾ 한국회계기준원은 2000년 7월 27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결의회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감법은 그 자체내에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법체내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진 법규범으로 하면서도 회계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6.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¹³⁾.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외감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외부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외감법에 일임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을 통하여 외감법의 규제영역 속에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포함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회사들은 외감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증권거래법은 외감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외감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감사에 관한 한 그 대체입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상법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간의 문제점과 재정립 방안

1. 상법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의 공청회를 거쳐 2006년 10월 3일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을 반영한 이후에도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추후 보완해야 할 조화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2006년 10월)

11) 외감법 제13조제4항

12) 외감법령 제7조의2

13) 증권거래법 제1조

법무부는 2006년 7월의 상법개정공청회를 거쳐 2006년 10월에는 상법개정에 관한 입법을 예고한 바, 상법 회계규정 중 주식회사의 자산평가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이 전부 삭제되고 재무제표의 종류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외는 시행령으로 위임되고 연결재무제표제도가 도입되는 등 대폭적인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2006년의 상법개정안에서는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에 위임규정을 뒤 민간회계기구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외감법에 기반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인해 비상장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회계처리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1997년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시한 일련의 상법개정 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위기적 상황에서 내외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급히 추진된 지난 수차의 개정과는 달리 이번 개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회사법개정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법의 변화는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자국의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법의 변화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래 동안 법률가들의 사고를 지배해온 회사법에 대한 종래의 틀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법의 방향전환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능적 관점의 부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우리 회사법개정도 이러한 세계적인 회사법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회사법 변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채권자이익보다는 주주이익의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채권자보호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회사의 기동성 있고 유연한 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보호가 회사법외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회사 참여자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규범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최소화하고 선택여지를 늘리고 있다. 이처럼 회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남용의 여지도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 비하여 이사회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만약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규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규제에 보다 치중하고 있다. 사후규제는 회사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저해하지 않고 문제된 행동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사후규제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회사소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면 사후규제는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다.

2006년 상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상 회계관련규정과 기업회계기준

과의 조화를 위해 상법에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과 같은 기본적인 회계원칙만 남기고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따르는 방법은 상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보다 간략한 형태의 회계규범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한, 상법 회계규정 중 주식회사의 자산평가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이 전부 삭제되었다. 둘째, 재무제표의 내용 및 용어의 정리를 단행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에 필요한 회계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상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①회사의 계산→회사의 회계(제7절의 제목), ②자본→자본금(제451조), ③재산 및 손익상태→재무상태와 경영성과(제29조, 제447조의4)]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회사가 임의의 선택으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서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후에 재무제표의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실무상 의문의 여지를 없앴고,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회에게 배당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당기준인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기주총일까지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주식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했다. 넷째, 실무상으로는 금전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같은 현물로 배당할 필요가 존재함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배당가능한 현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다섯째,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준비금의 경직된 운용의 문제를 해결했다. 여섯째, 미실현이익은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배제하였다(제462조 제4항 신설). 일곱째, 건설이자(제463조)는 출자의 일부환급 또는 장래 이익배당의 선지급으로 채권자에 불리하므로 폐지하였다.¹⁴⁾

나. 기업회계기준과 상법간의 문제점

(1)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체계와 적용범위 상 문제점

(가) 현행 상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체계상의 문제점

성문법 체계안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상법이 아닌 외감법의 위임으로 제정하므로, 상법과의 적용범위 및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내용의 조화가 어렵다. 기업회계기준은 특별법인 외감법의 수권에 의한 규범이므로 상법의 계산규정에 우선되어 상법의 기업회계에 관한 법

14) 김건식(2006), 상법(회사법)개정 주제발표, 상법(회사법)개정 공청회 자료, 법무부, p. 12-13.

원성과 지도원리로서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다.

외부감사제도와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감사보고서의 공시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을 기업회계기준의 근거법으로 삼아야 할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고, 기업회계기준이 꼭 자산규모가 70억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으므로 외감법의 기업회계기준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상법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내용상의 상충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내용상의 상충이 있다 하더라도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다면 적용상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은 설립계통이 달라 적용범위와 적용순위에 있어서도 명확한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법이 아닌 외감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작성만을 위임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명문규정은 어디에도 두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상법과 외감법에 의한 이원적 기업회계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상법 또는 외감법에 그 적용범위를 분명히 할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나) 적용범위상 문제점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에 근거를 두고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상사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제91조에서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이외 기업의 회계처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회계규범 상호간에 적용범위와 적용순위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군다나 외감법은 회계기준 제정기관에 기업회계기준의 제정만을 위임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스스로 그 적용범위를 언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상충으로 발생하는 기업회계 실무상의 혼선

기업회계실무에 있어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감사가 강제되므로 사실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가 강제된다. 반면,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는 세법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비외부감사대상기업이 외감법대상기업으로 성장하였을 때 추가적인 회계정보 재처리 비용을 발생시킨다.¹⁵⁾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는 상법상 회계관련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상법에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과 같은 기본적인 회계원칙만 남기고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따르는 방법은 상법이 아니라 시

15) 김광윤(2006), 앞의 논문, p. 23

행령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일정규모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보다 간략한 형태의 회계규범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한, 상법 회계규정 중 주식회사의 자산평가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이 전부 삭제되었다.

(3)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외감법 제13조의 수권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동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내부적으로는 외감법의 하위법규이며 외부적으로는 외감법의 일부로서 법이다. 즉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면 법령위반이 된다. 그러나 제정기관이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서 문제가 있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통설은 기업회계기준을 외감법 체계의 일부로 보아 외감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근거에 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으로 내부적으로는 외감법의 하위법규이며 외부적으로는 외감법의 일부로서 다른 법률과 구별된다. 기업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또는 세부사항도 외감법 체계의 일부를 이룬다'고 설명한다.¹⁶⁾

따라서 상법 제1조의 법원적용의 순서는 상사자치법,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민사특별법령, 민법전 및 민사관습법의 순서로 적용되므로¹⁷⁾ 기업회계기준은 상사특별법인 외감법의 일부로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기업회계규범의 내용상 문제점

(가) 상법상 회계규정의 불완전성과 후진성

성문법 국가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일차적 법원은 상법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회계관련 규정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하고 진부함으로써 사문화된 채 방치되고 있다.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는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에 위임규정을 뒤 민간회계기구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외감법에 기반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인해 비상장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16) 한국회계연구원(2001), 앞의 논문, p.14.

17) 손주찬외 3인, 주식 상법(1), 한국사법행정학회, p.119.

회계처리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모순

①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사항에 대한 상법상 계산규정의 미비

성문법국가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일차적 법원은 상법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계산규정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1984년 개정이래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부한 규정이 사문화된 채 방치되고 있다. 상법에서는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면서 기업회계에서 이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부채의 평가기준, 계정과목별 자산평가규정,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외화환산, 연결재무제표, 회계변경, 우발상황과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 현금흐름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주식 및 부속명세서에 대한 관련 규정 역시 없다.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과 같은 기본적인 회계원칙만 남기고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따르는 방법은 상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상법 회계규정 중 주식회사의 자산평가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이 전부 삭제되었다. 또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에 필요한 회계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였다.

②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상의 차이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내용상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 실무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항은 ① 기업회계기준이나 실무상 사용하지 않는 회계용어의 사용 ② 사채 및 주식 등의 일부자산에 대해 상이한 평가기준을 규정 ③ 기업회계기준에서 삭제된 다수의 이연자산의 계상 및 상이한 상각방법 ④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에 대한 상이한 정의 및 이익잉여금의 정의 누락 ⑤ 위의 계산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가능이익의 상이 등이다.

그러나,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는 상법에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과 같은 기본적인 회계원칙만 남기고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상법 회계규정 중 주식회사의 자산평가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을 전부 삭제하였고 상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실현이익은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배제하였다.(제482조 제4항 신설)

이러한 상법개정안의 방향은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사항은 가급적 상법의 계산규정에서 삭제하고, 구체적인 계산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용어상의 문제점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는 상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사용되는 용어 들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용어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29조 제1항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회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의 작성목적이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함에 있다는 취지는 대차대조표의 작성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회계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 의하면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상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특정한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대로 용어와 개념의 동일이 필요하고, 만일 재산을 자산으로 바꾸는 경우 상법 제29조와 제30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업상의 재산'이라는 표현도 '영업과 관련된 재무상태'라는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을 규정한 곳에서는 순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주고 있으며, 상법 제462조의 순재산은 순자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인데 회계상으로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회계처리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회계장부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상업장부와 회계장부가 다른 것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

상법 제459조, 제460조, 제462조, 제462조의 3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도 그 내용을 보면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잉여금을 의미한다.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는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잉여금의 의미로 사용하였던 용어이나,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④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 있어서의 차이점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는 배당가능이익범위의 차이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일부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평가이익을 당기순이익에 포함하고 있다(예,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지분법이익).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평가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된다면, 이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금의 제공으로 회사채권자는 상법 제46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전에는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아 이러한 평가이익의 사회유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적었으나, 최근의 경제여건은 중간배당제 도입, 시가배당률의 공시, 소액주주 및 외국투자자의 고배당요구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경우에는 1999년 상법개정을 통해 일부자산의 시가평가는 수용했으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에서 명문으로 제외하여 상기 문제를 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배당과 관련된 주주와 채권자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조화방안

(1) 상법상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체계상 조화방안

(가) 외국의 사례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상충은 기본적으로 그 체계상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므로, 기업회계규범의 체계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회계 관련규범의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회계규범에 존재하는 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규제 범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 또는 회사법과의 상충없이 민간전문기구에 의해 제정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회계규범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은 정부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띤 '기업회계심의회(Business Accounting Deliberation Council)'에 의해 제정되고, 이는 상관습범(상법의 하위규범)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아울러, 상법에는 기업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은 그 자체로서 범규성을 인정하는 근거법이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상법과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상법의 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Yoshiori Kawamura(www2g.biglobe.ne.jp/~ykawamura)).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법적지위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을 그 근거법률로 삼고 있으므로 외감법 적용기업에 대해서는 상법의 특별법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독일의 경우 상법에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어 완전한 성문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1998년부터 독일 상법 제342조의 범위내에서 민간기구인 독일회계원칙위원회(German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 의한 기준제정이 허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상법의 체계안에서 민간부문이 제정한 회계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범규정간의 상충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¹⁸⁾

(나)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체계와 적용범위의 조화방안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체계상 조화방안으로는 ① 상법상 계산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는 방법(미국형) ② 기업회계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모든 회계관련규정을 상법에 규정하는 방법(독일형) ③ 상법상 계산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키는 방법(일본형) ④ 일반규정으로의 상법상 계산규정은 보강하고 세부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위임을 명문화하는 방법(박정우, 2000)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법상 계산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는 방법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회계본연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작업이 상법의 제약 없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계산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규정간의 부조화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기구가 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이용자들로부터 충분한 권위를 인정받기가 어렵고 성문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 입법환경과 배치되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등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원리는 상법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을 모두 폐지하여 모든 회계 관련규정을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은 상법 체계 안에 모든 기업회계규정을 일원화하여 규정 간 부조화를 완전히 해소시켜 성문법적 체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라 상법을 계속적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독립적인 민간전문기구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배치되는 단점이 있다.

상법상 계산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키는 방법은 현행 상법과 외감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이원화된 법적 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상법상 계산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내용상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설립체통을 지닌 두 규범을 유지함으로써 적용범위 및 적용순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상법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및 기업회계기준개정에 의한 상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지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일반규정으로의 상법상 계산규정은 보강하고 세부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위임을 명문화하는 방법은 성문법 체계 안에서 상법의 일차적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으며, 빈번한 개정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여 회계본연의 목적 수행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또한 상법과 상법의 하위규범으로서의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해 질 수 있고, 기업회계의 세부지침으로서의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가 보장될 수 있지만 채권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상법과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간의 원칙적인

18) 한국회계연구원(2001), 앞의 논문, p.7

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안 중 기업회계기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가장 잘 보장하는 체계는 미국형 대안이다. 그러나 성문법적 체계를 유지해온 국내의 회계 및 입법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형 대안의 도입은 그 실현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다. 독일형 대안의 경우에도 이미 민간전문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고려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현행 상법과 외감법 체계를 유지하며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를 모색하는 일본형 대안과, 상법상 계산규정의 체계를 대폭 개정하고 외감법이 아닌 상법에 의해 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는 박정우(2000)의 주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13-18)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회계처리에 관한 범규범이 상법의 회계규정과 외감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대상회사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들의 회계처리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상법의 회계규정은 상대적으로 그 규범력이 약화되어 회계실무상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상호 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은 법체계상 외감법을 그 근거법률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민간회계기준에 그 제정권한이 위탁됨으로써 위헌의 시비마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은 상법 회계규정과 내용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을 상법상의 회계규범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충규정이라는 점에서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이 내용상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중심으로 기업회계처리에 관한 규범 체계를 새로이 개편해야 할 것이다. 즉 상법에는 기업회계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민간회계기준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정립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법에 민간회계기준구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²⁰⁾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과 같은 기본적인 회계원칙만 상법의 규정

19) 한국회계연구원(2001). 앞의 논문. p. 18.

20) 안경봉(2006). "상법의 관점에서 본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글로벌시대의 회계규범간의 관계 재조명 심포지엄자료, 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상사법학회.

으로 남기고 세부적인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따르는 방법은 상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법상의 회계규정 중 주식회사의 자산평가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은 전부 삭제하였다. 이는 상법에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회계규정만을 남겨두고, 회계처리방법을 기업회계기준에 실질적으로 위임하고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상 상위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문법 체계안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상법이 아닌 외감법의 위임으로 제정하는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상법과의 적용범위 및 법적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내용의 조화도 어렵다. 기업회계기준은 특별법인 외감법의 수권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상법의 계산규정에 우선되어 상법의 기업회계에 관한 범원성과 지도원리로서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는 문제는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외감법은 외부감사제도와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감사보고서의 공시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이 반드시 외감법에 근거하여야 할 논리적인 근거가 없고, 기업회계기준이 꼭 자산규모가 70억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의 근거규정을 외감법에서 상법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근거법을 상법으로 재조정하게 되면 상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체계상의 문제점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해석상의 문제, 그리고 수권법상의 적용범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법상의 회계규정의 보충

상법 총칙 중 상업장부의 규정이 너무 빈약하고 회사법의 계산규정은 인적회사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회계와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어 상업장부의 규정을 충실하게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상법의 지위를 회복하고 유동적인 관행이나 규범화하기 힘든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²¹⁾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과 같은 기본적인 회계원칙만 상법의 규정으로 남기고 세부적인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상법이 아닌 시행령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법 회계규정 중 주식회사의 자산평가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은 전부 삭제하였다. 따라서, 개정 상법에서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빈약하고 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상법상의 회계규정을 보충함으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계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더 많이 위임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배당기준의 보완

21) 국회사무처(2008), 앞의 논문, p. 6.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의 수정 시 과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증권거래법의 하위규정에서 상장회사 등에 대한 배당의 예외규정을 상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수정된 과거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뿐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상장회사 등에 대한 배당의 예외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법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규정을 통일하였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사이의 순자산액 등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상장법인 등에 대한 예외적 처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이익에 미실현이익이 포함되어 배당가능이익으로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 채권자보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²²⁾ 따라서 상법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이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의 제한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지분법이익 등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순자산을 증가시켜 현행 상법대로 하면 배당재원이 되지만,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으로 보고 사외유출하는 것은 상법의 기본취지인 자본충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2006년 상법개정안에서는 회사가 임의의 선택으로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서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후에 재무제표의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상의 의문을 없앴고,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회에 배당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당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주식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미실현이익은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제462조 제4항 신설).

(4) 회계기준의 다층화와 중소기업회계기준

인적회사 및 개인상인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복잡화로 인하여 일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회계기준을 그대로 실무에 적용시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기준의 다층화와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²³⁾

(가) 회계기준의 다층화

최근 들어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속도로 국제재무보고기준

22) 이만우외2인(2008), 회계 관련법규의 조화방안: 상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p.48.

23) 김광운(2006), 앞의 논문, pp.19-20

(IFRS)의 내용을 번역하는 수준으로 복잡화됨에 따라 실무계에서는 글로벌규모의 대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별하여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상장글로벌기업(또는 상장대기업)과 금융회사는 국제재무보고기준(영문 또는 한글)을 100% 그대로 적용하고, 일반상장기업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며, 비상장대기업은 상법상 회계규정을 적용하자는 안에다 중소기업은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자는 안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든 기업이 단일한 회계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 단일한 회계기준의 사용은 해외상장기업, 국내상장기업,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 등 여러 유형의 기업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정교한 회계기준의 적용을 모든 기업에 강제할 경우 일부 기업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체계는 외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전체에 대하여는 단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회계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인 회계기준과 다른 회계처리 및 공시를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인정(마이너스 접근법 사용)하는 한편, 일부 기업은 해외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국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고 있는 '부분적 이원화 체계'로 볼 수 있다.

(나) 중소기업회계기준(서)의 별도 제정 여부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 체계 하에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는 2003년 12월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부담을 완화해줄 목적으로 비정형의 시가 없는 파생상품,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지분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 등의 중요 회계상 논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즉,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전제하고 마이너스 접근법에 의해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에 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방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기준서 포함)을 모두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서 몇 가지 예외사항만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을 전제한 마이너스접근법에 의한 특례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회계규범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감법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용·평가, 감사에 대한 의무화가 전 외부감사대상법인에게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물적 비용이 증가되는 것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위와 같은 국제재무보고기준, 회계기준의 다층화, 중소기업회계기준(서)의 별도제정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법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5) 회계기준 자체의 개선점

국제화시대를 맞아 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세법 등 여타 기업회계규범들에 앞서 회계규범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회계투명성과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 할 것이다. 한편, 글로벌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국제재무보고기준이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회계기준을 그대로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이들 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의 다층화와 별도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은 회계규범의 수요자 즉 수범자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따라서, 회계기준 제정기관은 여타 기업회계규범들에 대한 선행규범자적 역할에 맞게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준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적인 수준의 회계기준 제정과 제정된 기준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재정 자립의 추구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IMF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합의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수준의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의무가 부과된 이래 종래의 공적 기관에서 제정된 조문식 기준에서, 2000년 7월 이후에는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의한 설명식 기준서로 변하는 등 우리나라의 회계기준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회계기준은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회계기준의 통일추세에 대응하여 빠른 변신을 하는 상황임에 반하여 상법의 회계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이며, 세법은 상법을 차용함과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에 일부 의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제화는 비단 회계환경에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법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등의 회계관련규범들의 상충문제를 해결 또는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경제사회의 투명성과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회계규범간의 특성과 목적, 상충문제, 조화방안을 모색하여 회계규범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역적 문헌연구의 방법에 의했다.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의 계산규정은 각기 지닌 고유의 존재이유와 특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에서 상충되어 있어 이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회계규범간의 조화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각 규범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수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수범자의 혼란은 회계 관련 부문에서의 사회적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 관련 규범들간의 조화방안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기대효익의 최대화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의 지향목표에서의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한 논의라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들을 동시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각 규범들간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문제 전반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회계규범의 국제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수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각 규범의 실행 내지 수범비용(회계정보의 산출비용, 세무정보의 산출비용 등)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막연히 그것의 감소를 위한 논쟁은 일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규범들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부조화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규범의 제·개정을 관장하는 기관들의 협력부족, 독자적 진행 및 협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재의 상황은 시스템적으로 각 규범이 부조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법체계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그 근거법률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민간회계기준에 그 제정권한이 위탁됨으로써 위헌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은 상법 회계규정과 내용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을 상법상의 회계규범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충규정이라는 점에서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이 내용상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중심으로 기업회계처리에 관한 규범 체계를 새로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상법에는 기업회계에 관하여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민간회계기준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정립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법에 민간회계기준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외감법은 외부감사제도와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감사보고서의 공시 등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이 반드시 외감법에 근거하여야 할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고, 기업회계기준이 꼭 자산규모가 70억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으므로 외감법의 기업회계기준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상범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인적회사 및 개인상인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복잡화로 인하여 일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회계기준을 그대로 실무에 적용시키기는 것도 현실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기준의 다층화와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도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제재무보고기준, 회계기준의 다층화,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별도제정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상범에서 근거규정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은 여타 기업회계규범들의 선행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적인 수준의 회계기준 제정과 제정된 기준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재정 자립의 추구와 독립성 및 전문성의 계속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중심의 문헌연구인 관계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지의 주장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함을 인정한다. 둘째, 회계규범에 대한 수요자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편협적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로는 회계규범에 대한 공급자측면에 대한 연구와 실증적 연구, 세법을 포함한 다자간 연구, 외국의 연구사례 등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고승희,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 제24집, 한국세무사회, 1999.3

국회사무처, '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2003.1

김건식, 상범(회사법)개정 주제발표, 상범(회사법)개정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06.7.4

- 김건식·박정훈·이창희,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김광윤, '회계기준, 상법 및 세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재검토', 회계와 감사연구 제43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06.6.
- 박정우, '우리나라 기업회계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 상법, 기업회계, 세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4.
- 박정우, '기업경영투명성 확보에 관한 연구 - 회계관련규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28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 박정우·정태음,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4.6.
- 박정우·정태음, '세법, 기업회계, 상법 등 상호간의 조화방안 연구', 글로벌시대의 회계규범간의 관계 재조명 심포지엄자료, 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상사법학회, 2005.1.
- 안경봉, '상법의 관점에서 본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글로벌시대의 회계규범간의 관계 재조명 심포지엄자료, 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상사법학회, 2005.1.
- 안성열,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에 따른 세무조정 유의사항 연구' 월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5.2.
- 오수근, '회계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상사법연구, 제18권 제3호, 2000.
- 왕순모, '기업회계법의 구축과 전망(1) - 기업회계의 법적 지위', 상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3, pp.109-149.
- 이만우·정석우·정규언, '회계관련법규의 조화방안 : 상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4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3.11.
- 이만우·정석우·정규언, '기업회계기준, 상법상의 계산규정, 세법의 조화방안', 글로벌시대의 회계규범간의 관계 재조명 심포지엄자료, 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상사법학회, 2005.1.
- 이우택, '세법상 기업회계 준용 규정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연구보고서 제42집, 2003.11.
- 이준봉, '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사이의 모순 및 조정방안', 올바른 기업회계법규범의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증권법학회, 2002.11.
- 정석호, '기업회계규범의 정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12.

최병성·홍복기·박정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사협의회, 2001.10.

한국회계연구원, '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KAI Forum, 2001.7.

(외국문헌)

AICPA,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 APB Statements No.4, 1973

FASB,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Business Enterprises" : SFAC No.1, 1978

Raby W. L. and Richter R. F, "Conformity of Tax and Financial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1975

浦野晴夫, 會計原則と確定決算主義, 森山書店, 1991

山本守之, '検討法人稅 改革', 稅務經理協會, 1997

鈴木義夫, ドイツ會計制度改革論, 森山書店, 2002

宮島 洋, '稅務論がう見た確定決算主義と申告調整主義', 租稅研究, 1993, 10